요금후납우편 담보금 국고귀속 안내

[서울용산우체국 공고 제 2018-6호]

서울용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요금후납우편 담보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 : 2018. 3. 12.(월)
2. 국고귀속대상 : 1건 20,000원
   o 국고귀속 범위 :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요금후납우편 담보금
   (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담보금)
3. 환급기간 : 2018. 2. 12.(월) ~ 2018. 3. 11.(일)
4. 환급장소 : 서울용산우체국 영업과
5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   가.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 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
   나. 계약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   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라. 계약자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     1)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     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용산우체국 요금후납우편 담당(02-6966-0824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2018년 2월 12일

서 울 용 산 우 체 국 장